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2. 트러스톤 재형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3. 트러스톤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2. 트러스톤 재형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3. 트러스톤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<u>4. 트러스톤 다이نام믹 코리아 50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</u>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